



제301회 임시회

2011.06.17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1년 6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11년 6월 8일

3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, 특별휴가 내용을 조정 및 추가하는 한편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행 조례의 중복된 사항 삭제

- 근무시간, 근무시간 등의 변경,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,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, 휴가의 종류, 연가일수, 공가,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, 겸직허가 조항 삭제

나.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(안 제2조, 별표 1, 별표 2)

-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,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문구 조정

다.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도록 단서 신설(안 제15조제5항 단서)

- 라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조정 및 추가(제18조제6항, 부칙, 별표 5)
-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특별휴가의 한시적 적용 특례 마련
 -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(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된 학습시설)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 사항 추가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 “근무기장 확립, 복장 등, 근무시간 등, 근무시간 등의 변경,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,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, 휴가의 종류, 연가일수, 공가,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, 겸직허가” 등 11개 조문 및 그 밖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,
 - ※ 대통령령 제22275호(2010.7.15. 일부개정), 대통령령 제22907호(2011.4.28. 일부개정)
-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“공직자의 행동률, 근검·절약, 신분증발급,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” 등 4개 조문 신설 및 그 밖의 일부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등 현행 28개 조문을 21개 조문으로 정비한 것임.
-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중에서 “결혼(본인) 7일→5일, 출산(배우자) 3일→5일, 입양(본인) 14일→20일로 조정하고, 결혼(자녀) 1일, 사망(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) 1일을 추가하였으며,
-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상당이하 자녀의 학교(관계법령에

따라 인가된 학습시설)행사 참석 시 3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.

○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한 것으로, 동 조례안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○ 다만, 법 적용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

- 조례안 제16조제3항 질병이나 부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. 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·조퇴 및 외출의 사유가 연가일수에 포함되는지?

아니면 제17조에 따른 병가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?

- 조례안 제16조제3항의 “지각” 과 제17조제1항의 “지참”이 그 의미가 서로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?
- 조례안 제18조제6항의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에 대하여
 - 대상학교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된 학습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?
 -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과 교원 등은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?

※ 참고

□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시 특별휴가 조례 반영 전국현황

- 전국 16개 시·도 교육청 : ‘없음’
-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: ‘충청북도청(2010.11.5.) 반영’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공무원법[법률 제10700호, 2011. 5.23, 일부개정]

제47조(복무 선서)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12.31]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31]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[대통령령 제22275호, 2010. 7.15, 일부개정]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